

	한국어교육센터규정	규정번호	3-7-37
		제정일자	2025.05.01.
		개정일자	2026.09.01.
		개정차수	1차
		소관부서	국제교류문화원 (한국어교육센터)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 국제교류문화원 산하 한국어교육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장 기능 및 조직

제2조(기능)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한국어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
2. 한국어교육과정의 개발·운영 및 평가 <신설 2026.09.01.>
3. 한국문화 체험 및 이해 증진 프로그램의 운영
4. 한국어연수생의 모집·입학·등록·학사 및 생활 지원 <신설 2026.09.01.>
5. 한국어연수생의 출입국 및 체류 지원 <신설 2026.09.01.>
6. 한국어강사의 선발·위촉·평가 및 관리 <신설 2026.09.01.>
7. 한국어교육 관련 홍보 및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 <신설 2026.09.01.>
8. 그 밖에 센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

제3조(조직) ① 센터에 센터장을 두며, 센터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②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센터에는 한국어교육팀을 두며 대학 직제규정에 따른다.

제4조(한국어강사) ① 센터는 한국어 교육을 위하여 한국어강사를 둘 수 있다.

② 한국어강사의 자격, 선발, 위촉, 복무, 평가 및 처우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학의 관련 규정과 「한국어교육센터운영지침」에 따른다.

[본조신설 2026.09.01.]

제3장 운영위원회

제5조(설치 및 기능)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어교육센터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신설 2026.09.01.>

1. 센터의 기본 운영계획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<신설 2026.09.01.>
2. 한국어교육과정의 편성·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
3. 한국어연수생의 모집·입학·학사·생활 지원 및 상벌에 관한 중요 사항

4.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<신설 2026.09.01.>

5. 센터 규정 및 운영 지침의 제정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<신설 2026.09.01.>

6.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
제6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은 대학의 교직원 또는 한국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7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.

[본조신설 2026.09.01.]

제8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센터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

제9조(비밀 유지)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4장 재정 및 보칙

제10조(재정) 센터의 재정은 대학회계 재원, 교육과정 수입금 및 그 밖의 지원금과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[본조신설 2026.09.01.]

제11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, 대학의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[본조신설 2026.09.01.]

제12조(운영 지침) 센터의 교육과정, 입학·등록, 수강료 및 환불, 출결·평가·진급·수료, 학적, 학생 지원, 강사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6.09.01.]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6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.